



법무부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등록번호	보안과-11241	교정정책단장	기안자	교정관	보안과장	보안정책단장	교정본부장
등록일자	2020. 4. 29.	연가	신용호	> 6월	다영준	김명현	정영익
결재일자	2020. 4. 29.						
공개구분							
			분류심사과장	백승민	의료과장	서정호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수정)

2020. 4.

보안과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수정)

20. 4. 29. 보안과

I 검토 배경

- 성소수자 개념·유형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 처우의 전문성 제고
- 성소수자 차별행위¹⁾, 인권침해, 성희롱 논란 방지 등을 위한 수용처우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II 성소수자 정의 및 입소 유형

- 성소수자(性少數者, **sexual minority**)란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이 사회에서 주류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제3의 성 등 다양한 정체성들이 있으며 **LGBTI²⁾** 또는 **퀴어(Queer)³⁾**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성소수 수용자 입소 유형
 - 트랜스젠더(Transgender) : 출생 시 부여받은 주민등록상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출생 시 성별은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여성)과 반대의 경우인 트랜스젠더 남성(트랜스남성), 그리고 제3의 성으로 인식하는 비이분법적 트랜스젠더(non-binary transgender)도 있으며, 의료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모두 포함
 - FTM(female to male)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 MTF(male to female)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1) ○○구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2019. 5.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 접수)

2)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인터섹스(intersex)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성소수자를 의미

3) 과거에는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쓰였으나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함에 따라 현재는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음

- **동성애자** :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성적·정서적 끌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
*게이(Gay), 레즈비언(lesbian)
- **양성애자(bisexual)** : 자신과 같은 성별이나 다른 성별의 사람 모두에게 성적·정서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
- **기타** : 이성 복장을 선호하는 사람 등

III | 관련 법규 및 국제 규범

□ 헌법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조(인권의 존중)

-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제5조(차별금지)

-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 제39조(성소수자 처우)

- ① 소장은 일반인과 다른 성적 지향, 성적체성, 신체 등을 지닌 신입수용자(이하 “성소수 수용자” 라 한다)는 상담결과 및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성소수 수용자 처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의 진료 등 의료처우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의 의견과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 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성소수 수용자에 대해 성희롱, 성폭행 및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동·목욕 별도 실시 및 이동 시 단독 동행 등
 2. 수용거실 앞 칸막이 설치 등 계호시설 보강
 3. 기타 필요한 경우 다른 수용자와 분리
- ⑤ 소장은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맞게 처우하되, 두발 길이 등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요크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2006)

◆ 「요크야카르타 원칙」 (Yogyakarta Principles, 2006)

- 성소수자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총 29가지의 원칙으로 나열·기술한 문서로 국제법 아래 성소수자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권기준으로 인정
- 제9원칙(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은 구금시설 배정시 폭력·잔혹한 대우·학대에 처하지 않도록 하고,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특별한 요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용자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적합한 수감시설 결정과정의 참여를 보장하며, 수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 마련,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실시 등을 요구

4) 국가는 특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사고와 관련된 편견적, 차별적 태도나 행동을 철폐하기 위하여 정책 및 제도 수립 시 성소수자의 상황을 고려하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님

□ 유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및 「특수한요구를가진수용자를위한핸드북」

◆ 유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및 「특수한요구를가진수용자를위한핸드북」

-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Drugs and Crime)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을 통해 국가가 차별 없이 모든 수용자들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등의 의무를 지니며, 특히 입소시 피구금자가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과 성별을 존중 받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⁵⁾
- 2009년 발간한 「특수한 요구를 가진 수용자를 위한 핸드북(Handbook on Prisoners with Special Needs)」 또한 성소수자 수용에 있어 기본원칙은 성희롱, 성폭력 등 수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 및 기타 차별적 대우로부터의 보호이며 다음 사항들을 원칙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함

<분류 및 수용>

- 성소수자들이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류체계의 도입
- (수용동 및 거실) 배정시 성소수자들의 의사 반영
- 안전을 위협하는 타 수용자와 함께 수용하지 않을 것
-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을 생물학적 성으로 분류하고 배정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대신 관계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성별 재지정을 위한 의료적 수술을 받은 사람, 과정 중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할 것
- 성소수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용시설의 수준에 차별이 없도록 보장할 것

<의료처우>

- 입소 시 종합검진을 포함하여, 사회에서 받았던 것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타 수용자들과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가능한 경우 호르몬 요법, 성별 재지정(성전환) 수술 등 성별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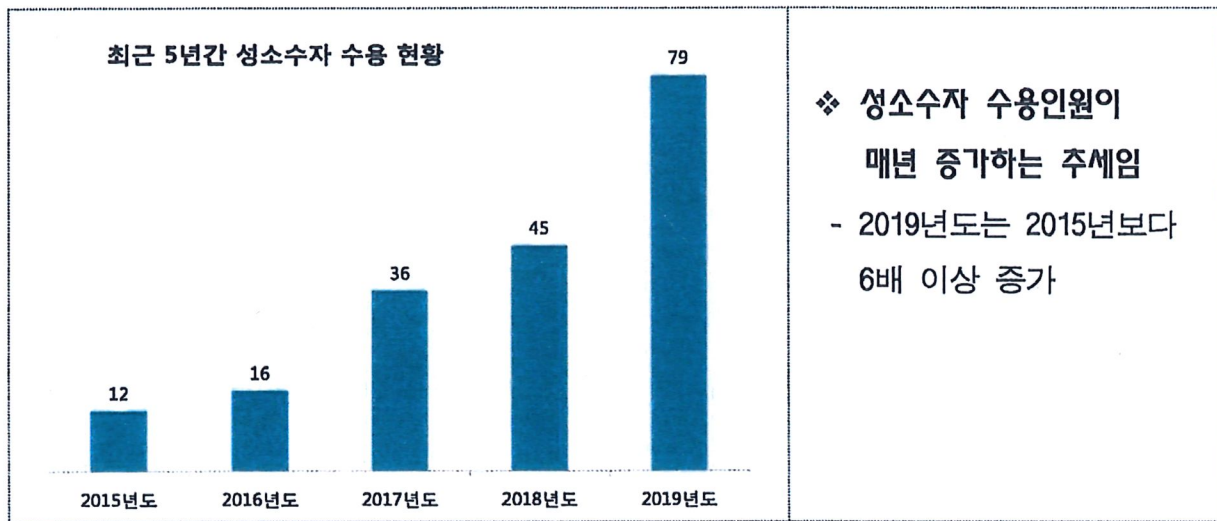
5) 제7조. 유효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교도소에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피구금자의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피구금자 파일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a) 피구금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 이 때 피구금자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별과 정체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후략)

III 성소수자 수용인원 현황

□ 성소수자 수용인원 현황

2020. 4. 17. 기준 (단위 : 명)

구 분	소 계	성전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기타
			게이	레즈비언		
인 원	83	9	49	6	10	8



VI 성소수 수용자 처우 가이드라인(수정)

□ 처우의 기본원칙

- 수용동 및 거실지정, 운동·목욕, 동행 등 처우 관련 성소수 수용자 본인 의견 수렴
- 성소수 수용자의 성(性) 정체성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수용자 및 근무자의 편견과 유형·비유형적 폭력으로부터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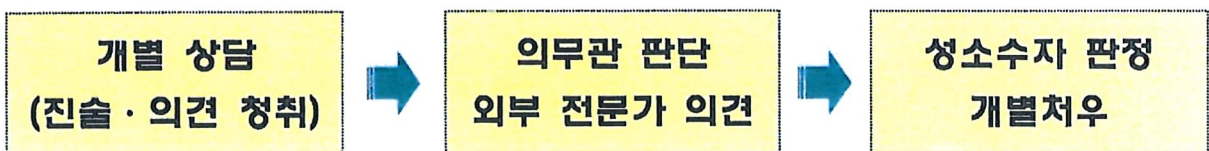
□ 처우별 가이드라인

○ 입소 및 성소수 수용자 처우 대상 결정 절차

- 수용자 입소 시 성소수자로 인지한 경우 다른 수용자와 즉시 분리, 개별 상담을 통한 수용자 본인의 진술과 의견을 청취, 당직교감에게 상담결과 보고, 거실지정, 고충처리팀, 의료과 등 관련 부서에 통보

- 평일 주간의 경우 수용자와의 상담결과, 의무관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소수 수용자 처우 대상 여부 결정, 야간 또는 휴일 등 의무관 진료가 어려운 경우 수용자의 진술·범죄개요 등 관련사항을 확인 후 분리수용하고, 추후 지체 없이 의무관 진료를 실시한 후 성소수 수용자 처우 대상 여부 결정
- 성소수 수용자 처우 여부가 수용자 본인의 의견과 상반되는 등 필요한 경우 외부의료시설 비뇨기과, 산부인과, 정신과 전문의 진료·상담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체 및 소지품 검사, 환복, 목욕 등 신입수용자 입소절차는 수용자의 의견과 성(性) 정체성, 신체적 성(性)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상당한 근무자가 실시

※ 성소수자 여부 판정 과정



○ 수용동 및 거실지정

- 수용동 지정 시 개별상담을 통한 성소수 수용자 본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법률적 성별, 신체적 성(性), 다른 수용자로부터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거실지정 시 수용자의 의견을 고려하되 독거수용 원칙 예외적으로 혼거수용
- 성소수 수용자 거실 주변 통행 제한, 거실 출입문 시찰구와 창문을 통한 시선 노출 방지, 다만 수용자의 의견, 자살·자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결정

예) 시찰구 : 커튼, 불투명판 등 ⇨ 근무자 시찰이 가능하게 출입문 바깥쪽에 설치

창 문 : 불투명 시트지 등

※ 다른 수용자의 불필요한 관심과 모욕적인 언행 등을 방지

※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가급적 수용동 맨 끝 또는 적절한 거실 수용

※ 성소수자 본인이 혼거수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 교정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의료처우

- 성소수 수용자가 호르몬 투여 등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의무관 진료·상담 등을 통해 필요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자비부담으로 하는 호르몬 투여(교정시설 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
 - ※ 의료처우 등에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하에 입소 전 수술 또는 치료(호르몬 투여 등) 병원에 관련 사항 확인
- 단순 질환의 경우 거실치료 및 순회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 검사를 요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의료과에 동행 진료하며, 사전에 진료시간을 조율하여 진료 전·후로 성소수 수용자가 환자대기실에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부득이 대기 시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이목을 끌지 않도록 좌석지정 등에 유의(단, 별도 좌석지정 등 낙인효과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정신과 전문의 진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의 초빙진료 또는 외부의료시설 이송 진료 등 실시

○ 의류 및 생활용품 지급 등

- 수용자복 : 지정된 수용동 기준에 따라 평상복 지급, 다만 속옷·화장품 등은 해당 수용자의 의견, 성(性)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품 지급
- 생활용품, 영치품, 자비구매물품, 소송 서류 등 교부 시 담당직원이 직접 전달 하고, 속옷 등 이성의 물품이 다른 수용자와 수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운동, 목욕, 접견(전화), 이발 및 동행 등

- 성소수 수용자 본인의 의견 및 다른 수용자로부터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단독 동행 및 개별 실시

◆ 이발 관련 참고 사례

- 2014. 1. 17. 09:40경 ○○(교) 수용자 김○○(트랜스젠더)가 수용관리팀장의 이발지시를 거부하여 조사수용, 1. 28. 징벌(금치9일) 처분
- 2014. 4. 10. 징벌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5. 5. 7. 원고 승소 확정

○ 종교행사

- 집합 종교행사 등 참석 시 다른 수용자로부터 위해 방지, 전담 계호
- 개인교회(종교상담)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종파에 요청하여 실시

○ 상담

- 안정된 수용생활 유도를 위해 수용관리팀장 등 상담자 지정, 수시 상담을 통한 고충사항 청취
 - ※ 심리치료 전문상담(위기·심층상담 등)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심리치료팀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정서적 안정과 고립감 해소 노력
 - ※ 작업·직업훈련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일반수용자와 공동생활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경우에는 필요 시 상담
- 전담 상담직원 및 감독자 등은 성소수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해당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상담 등 처우 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

○ 거실 및 신체검사

-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감독자 입회
- 신체검사 시 반드시 2명의 직원이 입회
- 거실 검사 시 허가 품목을 사전 숙지 후 검사

○ 개인정보 보호

- 업무 관련 직원만 수용정보에 접근 가능케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 필요 시 전산업무 담당자는 해당 수용자의 전자신분카드 로그기록 확인

○ 작업·직업훈련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 성소수 수용자 본인의 의견 및 나이·건강상태·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해당 작업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직업훈련) 부과 가능, 다만 다른 수용자와 공동생활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결정
- 성소수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 본인의 의견, 해당 교육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문화프로그램 및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실시 가능
 - ※ 작업·직업훈련 부과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사항은 교도관회의에서 심의

○ 출정

- 호송 시 다른 수용자로부터 위해 방지, 전담직원 지정 계호
- 검사조사실 또는 법정 동행 등 전담직원 지정 계호

- 구치감 대기 시 독거실 수용. 다만,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 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 가능

○ 기타 사항

- 성소수 수용자 처우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사·상담자 등), 관계 직원 및 교정위원 의견 반영
- 작업·직업훈련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일반수용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혼거운동 등 일반수용자에 준하여 처우 가능
- 수용동정, 상담, 진료 등 경과관찰을 통해 성소수자가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수용자로 처우

□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강화

-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목을 법무연수원 교정공무원 교육과정에 편성
- '20년 상반기부터 교정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인권감수성 향상

□ 성소수 수용자 보호를 위한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 입소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및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성폭력 등 각종 범죄·규율위반 예방 교육 및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 등 안내
- 기동순찰팀 순찰 및 탐문 활동 등을 통한 성범죄 예방
- 경미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여 징벌 처분 및 입건 송치

VII | 행정 사항

- 각 교정기관장은 기관 실정에 맞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계획' 수정 보완
- 각 지방교정청장은 순회점검, 기동감찰 시 소속기관 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은 '성소수자 인권보호 과목' 편성. 끝.